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규정 정비〉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37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0
1.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계획·실적 제출 대상기관	10
2. 참고 조문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국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¹⁾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 ----- ----- ----- -----.
1. 국가	1. 국가기관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현행과 같음)

1)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개정안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u>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u>국가기관</u>----- ----- ----- -----<u>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u> 규칙 및 대통령령-----.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한 조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8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²⁾에 대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³⁾하고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22.1.기준)된 기관은 총 350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 공공기관 220개)이며, 관련 규정은 [참고 2] 참조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현행 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국가·지자체·공공기관) 중 “국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⁴⁾

또한, 동 규정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병원, 국·공립학교 등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음.

국회·법원 등의 헌법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고효율 기자재 구매·도입, 친환경 차량 구매, 냉·난방온도 제한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의 구체적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상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기관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규범력이 행사되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고,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병원, 국·공립학교 등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와 관련한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이었던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하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규칙 등 해당 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헌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그 밖에 공공부문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임을 명확히 하여 해당 조치의 이행과 탄소중립 실천에 모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 비교

현행법	개정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 <u>국가</u>	1. <u>국가기관</u> ① <u>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u> ② <u>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u>	1. <u>중앙행정기관</u>
2.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4. <u>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병원, 국립·공립 학교 등</u>

한편,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추진 계획과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평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그런데 이와 같은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는 기관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실적 및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⁶⁾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및 결과 공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헌법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 및 헌법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⁷⁾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평가·점검 및 결과공표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공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7)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원 등의 헌법기관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06224호, 송옥주의원 등 20인)이 논의되었으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폐기하기로 의결된 바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점검 및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는 것에 동의하나, 실태점검 및 결과 공표가 국가안보·국방·통일 등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박성민의원 대표발의)⁸⁾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8) 각각 개정안과 유사하게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인 ‘국가’를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국회·법원·헌재·선관위’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임(의안번호 제 2203417호 및 제2204495호).

참고 1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계획 · 실적 제출 대상기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별표 2]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 · 군 및 자치구
4. 시 · 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 · 공립학교

참고 2

참고 조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관리업체가 별표 4를 별도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